

영국사례

보도대상자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했다면 '정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불만처리위원회는 John Redwood 가 Daily Mirror 지를 상대로 낸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위 신문이 지난 2005년 4월 2일 보도한 “그는 사람이 아니다... 투표하지 말라”라는 기사가 보도윤리강령 제1조 “정확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자는 위 신문의 보도가 많은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만신청인이 자선사업에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 1999년부터 불만신청인이 니키 페이지 양과 간통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 그리고 이혼과정에서 판사가 불만신청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보도한 것 Shadow cabinet 임원들에게 대해 헐뜯는 발언을 했다는 것 등을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했다. 또 위에 언급된 기사에서는 불만신청인의 아내가 선거 전에 불만신청인을 비판하는 공개편지를

지역 신문에 보냈다고 전했다.

불만신청인은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 교육기금을 정기적으로 낸 것과 British Legion에 1년에 한 번씩 자선기금을 냈다는 것을 은행 서류로 증명했다. 또 불만신청인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지역 단체도 도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 신문은 작성된 기사가 주요 정치가의 전 아내가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는 것이 뉴스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도했다고 말했다. 또 위 신문은 그 편지들의 주장(논란이 되는 모든 부분들이)은 기사에서 불만신청인의 전 아내가 말하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독자들에게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위 신문은 기사를 보도하기 전 Conservative Central Office를 통해 불만신청인과 접촉을 했고 답변으로 보내준 일반적인 의견을 기사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기사에 불만신청인의 자선 사업에 관한 일은 그의 전 아내가 주장한 것이라고 명확히 나타나 있지만, 불만신청인은 이것에 상반되는 증거물을 제출했고 위 신문이 이것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위원회는 기사에 나타난 주장들이 표현된 방식을 보나, 위 신문이 불만신청인과 접촉해 의견을 얻은 정황으로 보나 신문의 사과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신문사에서 주석으로 불만신청인이 페이지 양과의 관계에 대한 주장 및 Shadow Cabinet 멤버들을 헐뜯는 발언에 대한 반박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제외했다는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

위 신문은 보도 전에 Conservative Central Office에 자세한 기사내용을 제공하면서 불만신청인의 입장 또한 보도하려 했다. 비록 전 부인의 주장보다는 게재된 것이 적었지만 불만신청인의 반대 입장은 보도됐다. 이러한 정황으로 살펴볼 때 위원회는 독자들이 레드우드 부인의 주장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그러므로 제1조 “정확성”을 어겼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

호주사례

범죄 용의점이 있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합부로 초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및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Council of Official Visitors(정신질환자 옹호단체)의 주디슨 왓슨 박사와 Western Australian Department of Health의 수석 정신과 의사인 로완 데이비드 박사가 The West Australian 지에서 2005년 3월 16일 발간한 두 기사에 대해 낸 불만신청을 인정했다.

위 신문이 제1면에 보도한 “나체의 행인이 2명을 죽인 용의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마가렛 리버 지역의 한 여성과 그녀의 4살배기 딸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또 살인용의자로 지목된 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친족(親族)임도 밝히고 있다. 기사에는 사건 이후 주위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벌거벗은 남자의 사진이 포함됐다. 그 사진에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름과 그가 살해당한 2명의 친족이라는 주석이 붙어있다. 한편 두 번째 기사 역시 사진 속 남성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가 살인용의자라고 보도했다.

지난 3월 18일, 신문사는 사진 게재를 비판하는 독자들의 항의 편지를 신문에 게재했다. 이 편지

들과 함께 당일 신문에는 전보다는 훨씬 작은 사이즈의 동일한 사진이 게재됐다.

불만신청인들은 살인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의 이름을 기재한 것과 그의 정신질환 내력을 기재한 것 그리고 그의 사진을 공개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불만신청인들은 그 남성의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남성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만신청인들은 남성의 정신질환을 불필요하게 강조함으로써 신문을 읽는 독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The West Australian 지는 사진의 게재 여부를 무모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수석 편집장들과의 오랜 토론 끝에 결정한 것이라 말했다. The West Australian 지는 대중들이 목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찍힌 사진은 뉴스가치로 따져볼 때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남성의 정신질환은 사건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지나치게 강조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The

West Australian 지는 해당 기자가 정신질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고, 독자들의 비판 편지들을 게재함으로써 반대 입장에도 비중을 두었다고 주장했다. The West Australian 지는 불만신청인들과의 중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호주신문평의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중재에서 The West Australian 지는 데이비슨 박사에게 정신질환 환자와 정신질환 이슈에 관한 언론의 신중한 처리방법을 위해 1000자 이내로 신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The West Australian 지의 신입직원 감독관과 함께 신입 기자들을 지도할 기회도 제공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박사와 왓슨 박사는 The West Australian 지의 요청을 거절했다.

The West Australian 지의 중재 노력은 불만신청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진실하게 해결하려고 한 것이며 독자의 편지를 지면에 실은 것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사와 이틀 뒤의 기사에 사진을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 등을 금지하는 호주신문평의회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만신청인들의 불만을 인정한다. □